

조 례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
2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3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4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5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9
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7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6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거창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정함(안 제4조)
-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5조~제13조)
-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정함(안 제14조)
-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정함(안 제15조)

- 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를 정함(안 제16조·제17조)
- 사. 교육·훈련 등,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8조·제1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4. 29.~5.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응급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의 경우, 2021년 3월 7일 경남 거창군 북상면 국도 (37호선)상에 정차중이던 황산 탱크로리[명성통운(주), 허가 용량 13,600 L] 좌측면 상단부에 약 110kg(개근량 추정)의 황산이 도로상에 유출된 사고가 있었음.
- 조례가 제정되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 2)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의 수당
-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용 지원

나. 관련조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의견 청취(안 제11조), 재정 지원(안 제1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31	11	11	11	11	7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20백만원(2025년, 5년마다)
2.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의 수당: 연간 1백만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용 지원: 연간 10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

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

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4.]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시행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

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2. 8. 4.]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다. 시설현황 : 793.81㎡(교육센터 496.81, 온실 297)

주요시설 및 면적(㎡)			용 도
교육센터	계	496.81	
	1층	115.06	교육장
	2층	211.48	주민휴식공간 (당초 휴게음식점)
	3층	170.27	교육장 및 영상관
유리온실		297.00	교육 및 체험

라.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마. 위탁사무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위탁비용 : 131,521천원(연간)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아. 선정기준

-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평가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출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재공고

4.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2024. 8. ~ 9.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4. 11. ~ 12. :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점검
- 2025. 1. : 위탁운영 실시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다. 위탁운영계획 : 붙임참조

5. 검토의견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22억(낙동강수계 관리기금 100%)의 사업비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가 2020년 12월에 준공되어 농업회사법인 (주)강과사람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재정악화로 2023년 11월 30일 수탁을 포기함으로써 2023년 12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시 근무자로 해서 직영관리해 오고 있음.

- 전문성의 부족으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본 동의안이 제안되었음.
- 총 운영원가 167,831천원 중 전 위탁자 3년간 평균 수입액인 36,310천원을 제외한 131,521천원을 위탁비용으로 정하였고 수탁자 신청자격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음.
- 주례회의 보고 시, 의회의 주문사항으로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수탁자 선정,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의무 실시, 카페운영과 시설대관 보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중점을 둘 것 등의 의견이 있었음.
- 각종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센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바,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함

1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2 시설물 현황

- 시설물 : 793.81㎡(교육센터 496.81, 온실 297)

시설명(위치)	면 적(㎡)		용 도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계	496.81	
	1층	115.06	교육장
	2층	211.48	주민휴식공간 (당초 휴게음식점)
	3층	170.27	교육장 및 영상관
	유리온실	297.00	교육 및 체험

3 그간 추진사항

- 2020. 12.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사업 준공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16년) 선정 및 추진
 - 사 업 비 : 2,200백만원(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
- 2021. 2. 8. ~ 2023. 11. 30.
 - 농업회사법인 (주)강과사람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 관리운영 재정 악화로 인한 수탁 포기(2023. 11. 30일자)
- 2023. 12. 1. ~ : 직영 관리(기간제근로자 1명 상시근무)
- 2024. 3. ~ 6. : 상반기 환경교육 프로그램(기후변화 등) 및 운영

※ 교육장 대관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5. 24.기준)

계	회의실 대관		환경교육 프로그램(3월~6월)	
	횟수	인원	횟수	인원
43회 / 784명	21회	322명	22회	462명

4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사무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 위탁비용 : 131,521천원(연간)

※ 위탁비용 산출방법 : 운영원가 - 추정수입

① 운영원가 : 167,831천원 정도

(단위 : 원)

구 분		민간위탁 원가	구성비	비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113,859,156	67.8%	- 상시근무 3명 기준 (관리자 1, 운영자 2) - 정부 노임단가 기준 중소제조업 적용
	간접인건비	-	0.0%	
	인건비 합계	113,859,156	67.8%	
경비	인적보험료	11,113,308	6.6%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최근 3년간 실소요 경비 평균치 적용
	복리후생비	2,082,351	1.2%	
	전력비	6,033,258	3.6%	
	용수비	350,480	0.2%	
	수리수선비	438,727	0.3%	
	홍보광고비	330,909	0.2%	
	통신비	589,446	0.4%	
	소모품비	7,615,570	4.5%	
	안전점검비	4,562,726	2.7%	
	기타경비	2,606,723	1.6%	
	경비 합계	35,723,498	21.3%	
순원가		149,582,654	89.1%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2%)		2,991,653	1.8%	(순원가) × 2%
이윤(10%)		-	0.0%	미산정
위탁원가		152,574,307	90.9%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10%)		15,257,430	9.1%	(운영원가) × 10%
총 위탁원가		167,831,737	100.0%	(운영원가 + 부가가치세)

※ 노임단가는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연간 상승률은 미반영함

② 수입추정 방법

- 카페수입금(음료 등), 시설대관료(회의실, 영상관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전 위탁자 3년간 수입액 평균치로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2023	2022	2021	비고
금액	36,310	33,290	34,888	40,753	

- 추정 수입분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초과 수입은 운영비 재투자

○ 수탁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평가
 -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출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재공고

5 향후계획

- 2024. 6.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4. 8. ~ 10.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4. 11. ~ 12. :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점검
- 2025. 1. ~ : 수탁자 센터 운영 관리

6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 및 활성화
-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으로 환경보전 의식 함양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거창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을 정함(안 제2조)
 - 1)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2) 사업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환승 할인, 공영버스 결손 보전 등을 위한 지원
- 다. 차등 지원을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3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5. 9.~5.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항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음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비용

나. 관련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30	31	32	33	34	16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
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가. 보조금(손실 보상금): 30백만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가. 도로의 노면(路面)
 -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8호, 2020.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군·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시·군·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

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0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5.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

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 권한위임 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 및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질문(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및 등록말소에 관한 통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6조
3.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4.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5.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6. 자동차의 사용정지(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택시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7. 벽지도선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8.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나.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라. 터미널의 위치 변경의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마. 터미널의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아.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9. 터미널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사업면허·인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제88조
10.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효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정지	
11.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단, 해당 시·군내에서만 운행하는 한정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13.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관리,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의 회복을 위한 조치, 등록원부 및 기재사항 멸실·훼손·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나. 자동차 신규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및 등록의 거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9조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및 등록번호판·봉인 회수 폐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라. 자동차 등록원부와 기재사항 변경등록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마.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바. 자동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의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사. 자동차 압류등록 및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아.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 변경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 대행자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21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청문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업무 폐지신고 수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신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파.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시·군간 사업구역 조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하.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교부·반납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접수·시정·통지	「자동차관리법」 제28조
14.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15.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 승인 및 변경 승인	「자동차관리법」 제60조
16.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74조
1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84조
18.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19.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 허가·반환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20.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21.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22. 영업소, 정류소 등의 관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23.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4.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통보(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판결례(2009구합1285)

무료 환승 제도는 피고가 청주시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써 청주시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업체는 위 제도로 인하여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고가 그 손실액을 보조해 주지 않는 한 원활하게 무료 환승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청주시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업체에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거창군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어르신, 버스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마. 지원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바.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을 정함(안 제6조)
- 사. 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를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4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5. 9.~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창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거창군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3,000여 명이며 고령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르신들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현재 거창군의 고령화 추세와 정책을 살펴보면 버스이용요금을 포함하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수요와 예산증가가 예상되는 바, 예산 절감 및 확보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 선정 시 주소지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절차와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거창군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등 안내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교통카드 발행, 버스 이용요금 지원

나. 관련 조문

- 1) 버스 이용요금 지원(안 제4조)
- 2) 지원 요건(안 제 5조)
- 3)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안 제 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450	459	468	477	486	2,34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을 통해 거창군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 가. 보조금(손실 보상금): 300백만원
- 나. 시설비(카드 시스템 구축): 110백만원
- 다. 일반운영비(카드 제작): 40백만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2008년 이후 신설·확대·폐지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을
현행화하여 변화하는 농업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기능, 위치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센터의 시설을 현행화함(안 제4조)
- 다. 교육훈련을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61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179,100천원 확보(교육훈련비)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4. 15.~5.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신설·확대·폐지된 지역농업 개발센터 시설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체계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농업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비

나. 관련 조문: 교육훈련(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179,100	179,100	179,100	179,100	179,100	895,500

※ 강사료,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변동이 없는 가정 하에 추계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4년 예산

가. 교육사업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녹색대학 현장교육, 여성
농업인 교육 등

나. 세부 내역

- 1) 총사업비: 179,100천원
- 2) 교재제작: 2,800천원
- 3) 홍보자료 제작 등: 29,500천원
- 4) 교육 강사료: 30,000천원
- 5) 보상금: 1,500천원
- 6) 차량임차료: 10,400원
- 7) 교육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0천원
- 8) 그 밖의 경비: 79,900천원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현행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정) 1996.04.29 조례 제1394호
 (일부개정) 1998.09.19 조례 제1488호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 상

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갖추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지역설정에 따라 조정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 과학관
 9. 농산물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설
-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농업기술 보급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상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교육 기관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에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함에 따라 그 위치 및 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2조의2, 별표 1)
- 나.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1의2)
 - 1) 신설 :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 2) 삭제 : 파크골프장
- 다. 약칭 표현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2) 「지방자치법」 제156조

나. 예산조치

- 1) 2019년~2023년 예산 13,100백만원
- 2) 2024년 예산 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5. 10.~5.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따라 조례에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1의2] 체육시설 사용료로 변경하면서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는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과 동일하게 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이번
임사회에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출됨으
로써 파크골프장은 이 조례의 체육시설에서 삭제하는 사항임.

- 거창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에 생활체
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의 신설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별표 1)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설치비용: 2019년~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6차연도 (2024년)	계
계	1	1,042	1,464	3,787	4,028	2,324	13,100
국비 (29%)			295	1,148	1,516	831	3,790
도비 (0.8%)					2	98	100
군비 (70.2%)	1	1,042	1,169	2,639	2,510	1,395	9,210

나. 운영·관리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50	51	52	53	54	26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비용추계 요약: 2024년도 예산

- 가. 인건비: 10백만원
나. 운영경비(보험료,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20백만원
다. 일반관리비: 20백만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 순 행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8. 28.]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별표 1의2]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 료		
		소규모공연		무 료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2. (생략)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5.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5. 31.

2. 제안이유

- 파크골프장의 확대 설치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크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파크골프장 설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이용허가 등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료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라. 안전교육을 정함(안 제5조)
- 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을 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법」 161조

나. 예산조치

1) 20022년~2023년 예산 2,300백만원

2) 2024년 예산 20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5. 10.~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통합운영하던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확대 설치와 이용자 수의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파크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거창군에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보면 36홀 1개, 18홀 2개, 9홀 8개로 총 11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그중 36홀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인근 시·군 요금을 참고하여 정하였음.
- 파크골프 인구는 확대일로에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군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거창군 집행부 검토의견은 미반영으로 나와 있음.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파크골프장 설치 등(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36홀 파크골프장 설치비용: 2022년·2023년 예산 2,300백만원

나) 관리·운영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204	208	212	216	220	1,06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비용추계 요약: 2024년도 예산

가. 운영경비(보험료,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4백만원

나. 일반관리비: 200백만원(예초작업 및 잔디 보식 등)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 순 행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이선우	-이용료의 감면(안 제6조제9호) -면제대상에 거창군 체육회 의 체육행사 ⇒ 거창군 체 육회 및 거창군 파크골프협 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구체적 명문화	- 거창군 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파크골프협회가 포함되어 있어 구분 불필요	- 미반영
이선우	-전문관리인 배치(안 제6조제2호) -36홀 이상 파크골프장에는 파크골프 2급 이상 생활스포츠 지도사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배치	-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여야 함 - 파크골프장 관련은 법령 개정 시 법령에 따라 적용하면 됨	- 미반영
이선우	- 이용료(안 별표 2) -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 회원 등록된 거창군 종목별 협회 ⇒ 거창군 파크 골프협회 산하 클럽으로 수정	-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 설이므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임. 따라서 파 크골프협회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목적 에 맞지 않음	- 미반영
정종찬	- 이용료(안 제4조) - 이용료 징수대상 파크골프 장 규모: 36홀 이상 ⇒ 18 홀 이상으로 확대	- 우선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을 유료화 운영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점진 적 확대 시행 검토	- 미반영
정종찬	-위탁(안 제6조제1호) -비영리 법인 및 체육단체에 우선 지정 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법 제9조에서 특정 단체나 우 선 위탁 대상을 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위탁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모을 통해 위탁자 선정	- 미반영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